의안번호	제 7 호
의결연월일	2018. 9. 6.

-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8. 8. 29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: 2018. 8. 29.

다. 상 정 일 자: 2018. 9. 6.

제243회 예산군의회(정례회) 제1차 행정복자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(총무과장 : 김 승 영)

가. 제안이유

-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의 확대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가 요구되고, 이에 따른 조직의 체계적·효율적 운영을 뒷받침 할 보건소에 과(課) 직제 신설 조직개편 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-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행·재정 여건을 고려한 2018년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에 따라 정원 증원

나. 주요내용

-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설치(안 제8조)
- 2018년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70명에서 8명 증원 된 7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56명에서 8명 증원 된 764명으로 함 (안 제29조)
- 예산군 보건소 및 내포 출장소 위치 변경(별표 1, 별표 6)
- 예산군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표를 2018년 기준인건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(별표 9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안 명 애)

- 이 조례안은 보건소에 2개과(보건행정과, 건강증진과)를 신설, 조직개편사항과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변경, 2018년 기준 인건비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현안사업에 꼭 필요한 8명을 증원하여 총정원 770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7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756명에서 8명을 증원하여 764명으로 증원 하는 것으로,
- 이는 보건행정여건변화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, 능률적 행정업무수행과 "안전한 예산"을 위한 CCTV통합관제시스템 운영 등행·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근거하여 증원하는 것으로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·답변요지
 - O 생 략
- 5. 토 론 요 지
 - **그** 없 음
- 6. 심 사 결 과
 -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 요지
 - O 없 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
 - **O** 없 음